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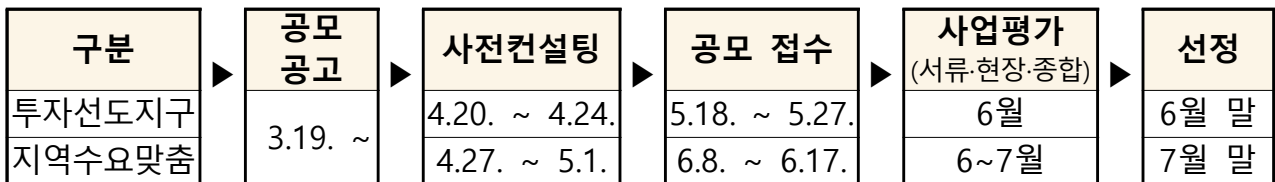
## 중소도시 성장거점에 1,000억원 푼다.

- 광역교통과 전략산업을 연계한 지역거점 투자선도지구 5곳(100억원/건), 주민 실생활과 밀접한 지역수요맞춤지원 15곳(30억원/건) 선정

- 국토교통부(장관 김윤덕)는 **중소도시 균형성장 등 국정과제**의 실현을 위해 **지역 성장거점 육성**을 위한 **2026년도 지역개발사업 공모**를 추진한다.
  - 공모는 최대 100억원의 국비와 73종의 규제특례를 지원하는 투자선도지구와 **낙후지역 주민의 생활여건을 개선**하기 위한 **지역수요맞춤지원 분야**로 실시한다. '15년부터 시작된 **지역개발사업 공모**에서는 그동안 220개\* 사업을 선정하여 **맞춤형 지원**을 제공하고 있다.
    - \* 투자선도지구 34개, 지역수요맞춤지원 186개 등
- 투자선도지구는 지역의 관광, 산업 등 특성화 지원을 통해 **민간투자를 활성화**하고 **성장거점을 육성**하기 위한 사업이다. 올해는 광역 교통망과 전략산업을 연계한 **융복합 거점 사업, 지역특화자원 활용 및 지자체 간 협업 사업** 등을 중심으로 5곳 내외를 선정한다.
  - \* 투자선도지구의 대상지역은 수도권·제주도 외 지역의 기초지자체이며, 발전촉진형(낙후지역, 최대 100억원 국비 지원)과 거점육성형(낙후지역 외)으로 구분
- 이번 공모부터 **제출서류를 간소화**하여 공모 준비부담을 완화하되, **사업 시행자 확정 여부·부지확보 현황·재원조달계획** 등 실현가능성을 중심으로 심사를 내실화한다.
- **지역수요맞춤지원**은 낙후지역 주민의 생활서비스 등 도시 기능 회복과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사업으로, 총 15곳 내외를 선정하고 사업당 최대 30억원을 지원한다.
  - \* 지역수요맞춤지원의 대상지역은 성장촉진지역 70개 기초지자체
- 앞으로는 기반시설을 건설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, **주민이 실제로 이용하는 사업에 무게를 둔다.** 기존 시설의 활성화를 위한 **프로그램 운영, 도시 기능 회복을 위한 생활서비스 보완, 인접 시·군이 혜택을 나누는 연계 사업** 등을 중점 지원한다.

- 특히 소멸 위험이 높은 지역활성화지역에는 선정 시 가점을 부여하여 가장 시급한 곳을 우선 지원하도록 하고, 2개 이상 시·군이 함께 참여하는 사업에는 각 시·군에 추가 예산을 지원하여 행정구역의 경계를 넘는 생활권 단위 협력을 유도할 계획이다.
- 국토교통부 신광호 국토정책관은 “지역소멸 위기 앞에서 중요한 것은 지역 투자를 통해 일자리를 만들고 살기 좋은 환경을 다시 만드는 일이다. 준비된 사업을 빠르게 선별·추진하고, 소멸 위기 지역과 시·군 간 협력 사업에는 과감하게 지원하여 지방 곳곳에서 활기가 눈에 보이도록 하겠다”라고 밝혔다.
- 공모에 관한 상세 내용은 지역개발정보시스템(rdis.or.kr)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, 3월 27일 지자체 설명회를 시작으로 사전컨설팅, 서면·현장심사, 종합평가 등을 거쳐 투자선도지구는 6월말에, 지역수요맞춤지원 사업은 7월말에 각각 대상지가 선정될 예정이다.

< 「2026년 지역개발사업 공모」 주요 일정 >



담당 부서	국토정책관 지역정책과	책임자	과 장	정승현 (044-201-3662)
		담당자	사무관	이강민 (044-201-3669)
			주무관	이의영 (044-201-3670)

## 참고 1 투자선도지구 사업 개요 및 '26년 공모방향

### □ 사업 개요

- (추진배경) 지역 성장거점을 육성하고 민간투자 활성화를 통해 지역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'15년부터 투자선도지구 지정 추진
  - 「지역개발지원법」에 따라 발전 잠재력이 있는 지역전략산업을 발굴하여 지역성장거점으로 육성하고 민간투자를 활성화
- (유형) 발전촉진형(낙후지역)과 거점육성형(낙후지역 外)으로 구분, 유형에 따라 정부 지원사항 차등 제공

구 분	발전촉진형(낙후지역)		거점육성형 (낙후지역 外)
	성장촉진지역 (지역활성화지역 포함)	특수상황지역 (도시지역, 접경지역, 새만금사업지역)	
지정요건	500억 이상 투자 또는 100인 이상 고용		
지원사항	<b>사업당 100억원 예산 지원*</b> (국비 100%)	기재부 협의시 예산 지원 (국비 50%, 지방비 50%)	
	세제·부담금 감면		-
	규제특례(건폐율·용적률 완화, 특별건축구역, 인허가의제 등 73종)		

\* 발전촉진형 국비 지원사항의 경우, 성장촉진지역으로 고시된 70개 시·군만 해당

### □ 2026년 공모방향

- (기본방향) 공모 선정 후 사업이 신속 추진 되도록 지역 수요에 부합하면서도 실현가능성이 높은 사업 선정
  - 교통·인프라 등 적정 입지를 갖춘 곳에 지원을 집중하여 지역 여건을 고려한 민간투자를 촉진하는 사업 추진
  - 광역 교통망과 전략산업을 연계한 융복합 거점 사업, 지역특화 자원을 활용하거나 지자체 간 협업 사업 등 중점 고려
- \* (예) 역세권 복합 개발, 수소연료전지+스마트팜 복합단지, ○○시·△△군 협업 사업 등
- (공모요건) 기반시설 확보(또는 확보가능성), 성장잠재력, 인근 지역 파급효과, 총투자금액 500억원 이상 또는 100인 이상의 신규고용 등\*
  - \* 지역개발지원법 제45조 및 동법 시행령 제50조 등
- (선정규모) 5곳 내외(유형별 비율은 여건에 따라 조정)

## □ 사업 개요

- (추진배경) 기존 대규모 SOC사업 위주에서 탈피하고 지역 인구 감소 대응을 위해, 주민 실생활과 밀접한 생활편의 사업 등 도입
  - 지역의 특화·고유자원을 활용하여 관광 활성화, 생활거점 조성, 주민복지 향상 등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사업 추진

## □ 2026년 공모방향

- (기본방향) 생활서비스 등 도시 기능 회복과 정주여건 개선 추진
  - 지역개발사업으로 조성된 시설을 개선하거나, 기존 시설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등 지원 사업
    - \* (예) 기존문화센터 조성사업 → 활성화어린이 문화프로그램 운영 및 시설개선 사업
  - 도시 기능을 회복하고, 기반시설과 생활서비스 보완을 통해 정주·생활환경을 개선하는 지자체 간 공동협력 사업
    - \* (예) A시 문화공원 + B군 복지센터 → 지자체 간 혜택 공유, 수요응답형 교통수단 지원
  - 주민의 생활불편 해소 및 삶의 질 제고를 위해 주민 실생활과 밀접한 정주·생활편의시설 지원 사업
- (대상지역) 성장촉진지역 시·군(70개)
- (선정규모) 15곳 내외 선정, 사업별 최대 30억원 지원
  - \* 지역격차를 줄이기 위해 **지역활성화지역에 가점부여** 등 우대, 2개 이상 시·군 공동협력 사업은 각 시·군당 추가 예산 지원 / 지원규모는 주된 사업내용에 따라 조정 가능